

변경대비표

1. 투자신탁의 명칭: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모투자신탁(미달러)[대출채권-재간접형]

2. 변경 사유:

- 한도 및 제한의 예외 사항 수정

3. 효력발생(예정)일: 2025년 06월 12일

4. 변경 주요 내용:

[신탁계약서]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제 19 조(운용 및 투자제한)	<p><생략> 1.~6.<생략> 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생략, 현행과 같음> 1.~6.<생략, 현행과 같음> 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u>장외파생상품 매매</u>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p>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7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생략> 1.~4.<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및 제2호, 제4호,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생략, 현행과 같음> 1.~4.<생략, 현행과 같음>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8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8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